



# 영국 법정 퇴직연령제도 개편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영국

이정희 (영국 워릭대학교 노사관계학 박사과정)

## ■ 머리말

지난 5월 총선이 치러지기 전부터 법정 퇴직연령제 철폐는 시기 문제만 남았을 뿐 기정사실과 다를 없었다. 총선 과정에서 집권 여당이었던 노동당이 먼저 법정 퇴직연령제(Default Retirement Age)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연령을 상향조정하거나 혹은 폐지할 것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바로 다음날 제1야당이었던 보수당이 퇴직연령제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총선 후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꾸린 자유민주당의 퇴직연령제에 대한 공약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퇴직연령제 폐지는 연립정부가 추진 중인 총체적인 영국 연금시스템 개혁의 한 방안이다. 지난 7월29일 던컨 스미스 고용연금부 장관은 2011년 10월부터 법정 퇴직연령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sup>1)</sup>. BBC로 생중계된 이 날 발표에서 스미스 장관은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오랫동안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다”며 “우리가 가장 원치 않는 일은 퇴직연령 제한 때문에 그들의 일자리에서 그들의 기술과 열정을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이 같은 안을 영국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 승인될 경우 기업들은 특별한

1) BBC 2010년 7월 29일자 'Fixed retirement age to be axed' <http://www.bbc.co.uk/news/business-10796718>

이유 없이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없게 된다.

## ■ 법정 퇴직연령제도 폐지 이유

영국의 법정 퇴직연령은 2006년 10월부터 발효된 ‘고용평등(연령)법(Employment Equality(Age Regulations))’에 규정돼 있다. 실제 이 법의 취지는 법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이’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차별하는 등의 불이익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남성 만 65세, 여성 만 60세 미만의 노동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시킬 수 없다. 하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이 법이 “사용자는 법정 퇴직연령 이상의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는 뜻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sup>2)</sup>. 실제 65세가 된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노동자들은 65세가 되는 생일 6개월 전에 노동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는 그 신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겠다’는 결정 사항을 통보하기만 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 연령층의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를 허용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령 노동자층을 위한 단체인 ‘에이지 컨선(Age Concern)’ 등이 주체가 된 조직체인 헤이데이(Heyday)는 “나이를 이유로 고용조건상의 차별을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며 이 법이 발효되기 전부터 반대운동을 벌여왔고, 고등법원에 법정 퇴직연령 도입의 불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위헌 입법 심사(judicial review)’를 요청하기도 했다<sup>3)</sup>.

2) 하세정(2008), “영국의 법정 강제퇴직연령을 둘러싼 논쟁”, 『국제노동브리프』 6 (11), pp 68~74, 한국노동연구원.

3) 당시 헤이데이 주장은 법정 퇴직연령 규정이 나이에 근거,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유럽연합 전역에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EU의 ‘평등대우지침(European Equal Treatment Directive)’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09년 3월 6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이 규정이 유럽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국 정부의 법정 퇴직연령 규정이 사회적 혹은 고용정책과 연계된 ‘합법적 목적(legitimate aim)’을 갖고 있는 한 EU 지침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뒤이은 영국 대법원의 판결 역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폐지 운동이 오래 진행돼 왔고 실제 영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높아졌으며, 퇴직 이후에도 생활의 불안정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정 퇴직연령제 폐지의 첫 번째 이유로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 노동자들의 직업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가디언 보도<sup>4)</sup>에 따르면 매년 2만 5,000명 가량의 노동자들이 법정 퇴직연령 규정 때문에 은퇴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이가 65세(남성) 혹은 60세(여성)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강제 퇴직’ 당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영국 노동계도 법정 퇴직연령제 폐지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영국노총(TUC)은 정부안이 발표된 당일 성명<sup>5)</sup>을 내고 “노동자들이 나이 때문에 하루 아침에 해고당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정부안을 지지했다. 브렌단 바버 영국노총(TUC) 위원장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퇴직할지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 권한을 노동자들에게 부여해야 하며, 다만 이 경우 유연노동에 관한 새로운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이 제도의 변화는 퇴직에 관한 노동자들의 선택권에 관한 것으로만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더 오랜 기간 일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연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법정 퇴직연령제 폐지에 대해 영국의 대표적 노동단체인 영국노총(TUC)이 찬성하는 것은 가까운 프랑스의 경우와 대비된다. 지난 6월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는 연금재정 적자 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미테랑 사회당 정부 시절 60세로 낮췄던 퇴직연령을 2018년까지 62세로 연장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고, 최대 노동단체인 노동총동맹(CGT) 등의 거센 비난에 직면해 있다.

영국노총이 퇴직연령 폐지에 찬성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퇴직 이후 노동자들이 삶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sup>6)</sup>에 따르면, 55~64세 연령대의 이른바

4) The Guardian 2009년 3월 6일자. “British compulsory retirement age can stay at 65, says European court”. <http://www.guardian.co.uk/money/2009/mar/06/retirement-age-ruling>

5) TUC 2010년 7월29일 성명 “TUC welcomes default retirement move”. <http://www.tuc.org.uk/law/tuc-18266-f0.cf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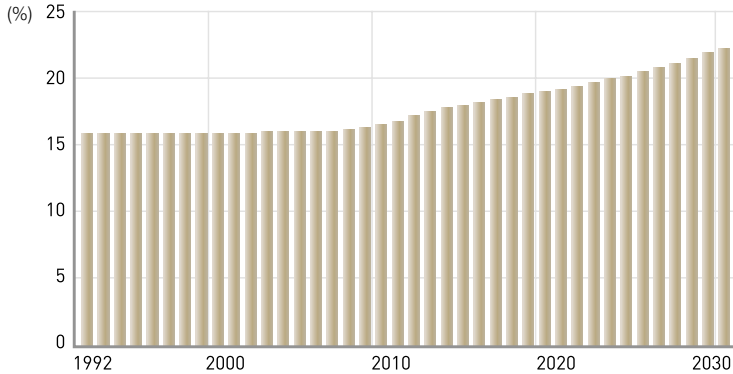
6) Daily Mail 2010년 2월10일자. “A generation in denial: Millions face retirement poverty

‘예비 퇴직층(pre-retirees)’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퇴직 후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액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퇴직 후 재정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보험사 Aviva가 이 연령층 1,2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꼴로 퇴직 후에도 여전히 모기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들 중 20%는 그 규모가 75,000파운드(약 1억 4,000만 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는 대개 25년 상환 조건인 모기지를 노동자들의 55세 생일 혹은 그 이전에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을 깨는 일이다. 더욱이 응답자의 40%는 저축액이 전혀 없다고 밝혔고, 저축을 하고 있더라도 연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현금 저축액은 평균 8,600파운드(약 1,600만 원)에 지나지 않았다. 이 신문은 모기지 상환 부담과 낮은 저축액에 연금 수령액의 감소까지 이어져 퇴직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지난 10년간 무려 70%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 제공 업체 Moneyfacts 조사에 따르면 퇴직연령이 65세에 이른 노동자가 지난 20년간 매달 100파운드(약 18만 원)의 연금을 납부했다고 가정할 경우, 2000년 1월에 퇴직했다면 연금 수령액은 연간 9,000파운드(약 1,660만 원)이었겠지만 2010년 1월에 퇴직했다면 그 규모는 2,542파운드(약 469만 원)에 불과하다. 이 신문은 이 같은 현실 때문에 평균 퇴직연령을 넘어서까지 일을 하고 있는 고령 노동자층이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실제 연금수급 자격이 부여되는 만 65세 이상 남성 및 60세 이상 여성 가운데 140만 명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 퇴직 이후 개인 파산을 신청한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 개인 파산을 신청한 퇴직연령층은 4,816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4%가 증가한 6,952명이었고, 전문가들은 이 규모가 올해 8,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고령층 생활의 불안정성은 평균 수명의 증가로 더욱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영국인의 평균 수명은 1985년 남성 71세, 여성 77세였으나 현재는 남성 77.4세, 여성 81.6세로 높아졌다.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ONS)에 따르면, 오는 2025년쯤 되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 참조).

because they've remortgaged their homes and saved too little".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1249783/A-generation-denial-Millions-face-retirement-poverty-theyve-remortgaged-homes-saved-little-seen-pensions-dwindle.html>

[그림 1] 영국의 고령화 추세 (65세 이상 인구 비율)



출처 : 영국 통계청.

## ■ 퇴직연령제 폐지 후 기대효과

무엇보다 연립정부가 법정 퇴직연령제를 폐지기로 결정한 가장 주된 이유는 이와 연동된 연금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연금수령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전 노동당 정부는 2024년에 66세, 2044년까지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연립정부는 이 기간을 좀더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새 정부는 2016년까지 연금수령 연령을 66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는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기를 언제로 할지 검토 중이다. 던컨 스미스 고용연금부 장관은 지난 7월19일 언론 인터뷰<sup>7)</sup>에서 “현재 정부는 연금수령 연령을 68세로 까지 높일 계획인데, 우리는 이 기간을(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더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언론들은 결국 이 말은 2038년부터는 연금

7) London Evening Standard 2010년 7월19일자. “Iain Duncan Smith to accelerate change in state pension age to 68”. <http://www.thisislondon.co.uk/standard/politics/article-23857670-iain-duncan-smith-to-accelerate-change-in-state-pension-age-to-68.do>

수령 연령이 68세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던컨 스미스 장관은 이어 “현재 노동능력부재수당(Incapacity Benefit)을 받고 있는 260만 명 중 150만 명을 일자리와 연계된 수당 혹은 일자리로 끌어들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금제도 개혁은 그 자체로 노동계 반발에 부딪쳐 있고, 법정 퇴직연령제 폐지는 기업의 인력관리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재계의 반발에 부딪쳐 있다. 기업들의 불만은 법정 퇴직연령제가 폐지되면 노동력 수급 등과 관련한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매개가 없어진다는 데에 있다. 영국 상공회의소(BCC)는 “현 정부는 고용 관련 법에 의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동시에 자신들의 노동력을 관리하는 능력을 제한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대했다. BCC의 아담 마셜 정책국장은 “사용자들도 현재의 퇴직연령이 낮아 이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금 수급연령도 함께 올리거나 사용자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해고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 맺음말

이상에서 영국의 법정 퇴직연령제 폐지에 관한 최근 정부 입장과 이에 대한 노사의 반응을 살펴 보았다. 연립정부의 발표가 그대로 실현된다면 2011년 10월부터는 정해진 퇴직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법정 퇴직연령제 폐지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노동자들이 더 오랜 동안 일을 할 수 있게 독려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동시에 이 방안이 공공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에만 의존했던 고령자들의 많은 수가 이제는 일을 하면서 세금도 계속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디언의 지적<sup>8)</sup>처럼 퇴직연령에 관한 제도 변화가 곧바로 연금 문제를 해결할

8) The Guardian 2010년 8월1일자. “Abolition of retirement age is wise, but it won't solve the pensions problem”.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0/aug/01/abolition-retirement-age-pension-deficit>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연금재정 건전성 확보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또한 평균 수명 증가에 따른 연금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또는 재정적 이유로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취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노령 노동자층이 유연노동제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 변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L**

## 법정 퇴직연령제 폐지와 관련된 <Q&A>

### 1. 새 제도 시행 이후에 노동자들은 65세에 퇴직할 수 있나?

☞ 물론이다. 65세 혹은 그 이전이라도 퇴직해서 공적연금의 하나인 기초연금(State Pension)을 받을 수 있다.

### 2. 이 제도 변경이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미치나?

☞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로 결정한 노동자들은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기존 퇴직연령에 퇴직했을 경우와 견줘 약간 늘어난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퇴직연령은 연금연령과는 약간 다른 이슈이다. 연립정부는 이미 연금수령 연령을 66세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고, 현재는 언제부터 이를 조항을 발효할지의 문제만 남아 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2016년까지, 여성은 2020년까지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3. 노령층 노동자들이 청년층 노동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건 아닌가?

☞ 이것이 법정 퇴직연령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지자들과 정부는 이 둘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노령층 노동자들이 더 오랜 기간 일을 한다면 더 많은 상품이 생산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의 수요로 이어질 것이며, 이와 같은 선순환 고리로 인해 결국 청년층을 포함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가 창출됨을 의미한다.

#### 4. 사용자 입장에서 보자면, 노령층 노동자를 특정 일자리에서 빼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 더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는 노동자가 자신의 퇴직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사용자는 그 요구를 신중히 고려해 결정사항을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연장 여부는 사용자의 결정권에 달려 있는 셈이다. 만약 법정 퇴직연령제가 폐지되면 노동자들은 현재 퇴직연령 이상이 되도록 일을 계속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젊은층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성과가 나쁘거나 계약에 정해진 어떤 일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당한 해고에 직면할 수 있다.

#### 5. 모든 노동자들의 퇴직연령제가 폐지되는 것인가?

☞ 아니다. 예외조항이 마련될 것이다. 정부는 실제 65세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수행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몇몇 업무, 예를 들어 경찰, 항공교통관제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둘 예정이다. 다양한 형태의 육체노동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령제 유지에 관한 결정을 ‘객관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6. 다른 고려사항은 없는가?

☞ 노동자들이 65세 이상이 되어도 계속 일하기로 하였을 경우 노동자들이 받는 수당이 계속될지 여부에 대한 많은 토론이 남아 있다. 또한 법정 퇴직연령제 폐지가 사업장의 연금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